

1. 개정이유

하천관리청이 하천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하계기간 등 일정기간 동안 불법 점용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의 「하천법」이 개정(법률 제20333호, 2024. 2. 20. 공포, 2024. 8. 2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하계기간 불법점용 등에 대한 점검기간, 점검결과 통지 및 통지서식 등 신설·정비(안 제36조제1항~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5. 2. ~ 6. 12.)

하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하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 제목 “(하천관리상황의 점검 통지)”를 “(하천관리상황 등의 점검 통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영 제82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란 매년 5월 말까지를 말하고, 법 제74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란 6월 21일부터 9월 20일까지를 말한다.

제36조제2항(중전의 제1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1항) 중 “영 제82조제2항”을 “영 제82조제4항”으로, “점검 사항 및 조치결과를 매년 6월 말까지”를 “다음 각 호와 같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74조제1항의 하천관리상황에 관한 점검사항 및 조치결과 : 매년 6월 말 까지
 2. 법 제74조제2항의 불법점용에 관한 집중점검 및 조치결과 : 10월 말 까지
-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52호서식 및 제52호의2 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52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4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발신기관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불법점용 집중점검 결과 통지

「하천법」 제7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불법점용 집중점검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립니다.							
하 천 명	점 검 내 용				조 치 내 용		비고
	점검일자	위 치	점검사항	적발사항	조치 일자	조치사항	

발신기관의 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6조(<u>하천관리상황의 점검 통지</u>) <신 설>	제36조(<u>하천관리상황 등의 점검 통지</u>) ① 영 제82조제1항에서 “ <u>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u> ” 이란 매년 5월 말까지를 말하고, 법 제74조제2항에서 “ <u>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u> ” 이란 6월 21일부터 9월 20일까지를 말한다.
①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영 제82조제2항에 따라 <u>점검사항 및 조치결과를</u> 매년 6월 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② ----- 영 제82조제4항----- 다음 각 호와 같이 -----.
<신 설>	1. 법 제74조제1항의 하천관리 상황에 관한 <u>점검사항 및 조치결과</u> : 매년 6월 말 까지
	2. 법 제74조제2항의 불법점용에 관한 <u>집중점검 및 조치결과</u> : 10월 말 까지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52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52호서식 및 제52호의2서식에 따른다.